

# 언론 사람

**03**  
2020  
VOL.237



**04** 인터뷰 人+人  
박일환 전 대법관

**06** Newmedia of the World  
코로나19 루머와 '팩트의 한계'

**08** 세상사는 法  
실명과 익명의 표현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우리가 공유해야 할 부끄러움  
'미안해요, 리키'

<b>04</b>	<b>인터뷰 人+人</b> 박일환 전 대법관	<b>12</b>	<b>이달의 시</b> 전나무 숲속에서 들려오는 3월의 법문
<b>06</b>	<b>Newmedia of the World</b> 코로나19 루머와 '팩트의 한계'	<b>14</b>	<b>단어의 중력</b> 버티다
<b>08</b>	<b>세상사는 法</b> 실명과 익명의 표현	<b>16</b>	<b>내 마음의 활동사진</b> 우리가 공유해야 할 부끄러움 '미안해요, 리키'
<b>10</b>	<b>돋보기</b> 좌절과 재기의 갈림길	<b>18</b>	<b>NEWS</b> 위원 동정
		<b>19</b>	<b>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언론중재</b> '9와 언론중재위원회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권오근  
**발행일** 2020년 3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코비즈 T 02-2272-1400  
**표지 작품** Leonid Ikan  
 <Transparent icicles on water>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어 있던 나뭇가지 위에 새 봄이 올망졸망 내려앉았다.  
영원할 것 같던 겨울도 마침내 끝을 맞이한 모양이다.  
질병으로 소란한 사국도 결국에는 건강하게 돌아오리라.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겨울이 가고,  
오지 않을 것 같던 봄이 왔듯이.



# 변화의 시기일수록 중요한 가치, 신뢰

박일환 전 대법관

새로운 미디어로 인해 허위조작정보 등 부작용이 심화되어 관련 법제의 변화가 요구되는 요즘,  
유튜브의 장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이가 있다.  
악플이 없는 ‘댓글 청정지역’으로도 유명한 <차산선생법률상식>을 운영하고 있는 박일환 전 대법관을 만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대처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197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12년에 대법관으로 퇴임하셨는데요. 35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유튜버가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은퇴할 나이가 되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어렵죠. 처음에는 강연을 하거나 책을 쓸 생각을 했는데, 큰 인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웃음). 그러다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니 법리를 정리하는 내용이 많지 않았습니다. 마침 딸이 유튜브를 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민·

형사 관련, 명예훼손, 혐오표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달에 3~4개 정도 콘텐츠를 올리고 있어요. 다른 유튜버와 같이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죠. 얼마 전 공인에 대해 다뤘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콘텐츠에서 오는 반응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반응이 올 때도 있죠. 원래 구독자 목표는 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4만 명이 넘었어요.



사진에서 방송 촬영 중인 모습

**Q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에 의한 의견 표현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인격을 침해하거나 허위조작정보가 남발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유튜브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 건 사실이지만 문제점도 많이 있죠. 최근에는 허위조작정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허위조작정보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인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라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번 코로나19 감염도 처음 발견한 의사가 말한 것을 허위조작정보라고 했었는데 결국 사실로 판명이 났잖아요.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서 허위정보를 판단하고, 단속하는 권한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검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1인 미디어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도 회복할 길이 없는 것도 문제죠. 언론사의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자체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게 유의하는 면이 있지만, 1인 방송은 문제가 발생해도 폐쇄하면 그만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언론중재법으로 피해구제가 어려운데요. 법조인이자 크리에이터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유럽에서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 혐오나 차별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방치하면 플랫폼 사업자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스스로 지우는 것은 그 채널의 '아이덴티티'를 손상시킬 수도 있죠. 유튜브가 인기 있는 것은 누구나 콘텐츠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 그 콘텐츠를 사업자가 삭제하거나 막는다면 유튜브의 정체성을 잃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 시 업로더(Up-Loader)와 플랫폼의 책임에 대해 우리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심하게 제재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므로 그 균형을 찾아야 해요.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지금, 국가 간 조약이나 규약을 통해 공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Q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으로 재직하시고, 서울지법 언론전담재판부 초대 부장판사를 지내기도 하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시다면?**

**A** 1991년에 강원중재부에서 중재부장을 맡았었죠. 지금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건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때는 사건이 많지는 않았어요. 또 1996년 서울지방법원 언론전담재판부(민사25부)가 신설될 때 초대 부장판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언론 관련 사건이 늘어나다 보니 판결 기준이 들쭉날쭉해서 법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죠. 일 년 반 정도 언론전담재판부에 있었는데, 당시 유명 배우가 자매지간인데 모녀지간이라고 잘못 보도한 잡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기억에 남네요.

시사성 있는 보도가 아닌데도 명예가 훼손되는 내용을 심층 취재해서 보도했어요. 당시 법원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때라 언론사는 판매 부수를 더 우선시 했는데, 언론전담재판부에서 인격권과 명예의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액을 1억 원으로 판결한 첫 사례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이 5천만 원으로 감경되긴 했지만요.

**Q 사회 원로로서, 크리에이터로서, 젊은 세대를 비롯한 언론사람 독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유튜브는 확장성이 좋은 것이 장점이지요. 서울이나 제주, 우리나라나 해외 어디에서도 올릴 수 있고, 집이든 지하철이든, 낮이든 밤이든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전파력이 크고 반복해서 볼 수도 있지만, 책처럼 부피를 차지하지도 않죠.

그러나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내용이나 댓글로 상처를 주기도 해요.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리는 분들도 공익을 염두에 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밋밋하더라도 오래갈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채널의 연속성은 높아질 수 있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 조금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인기에만 영합하는 콘텐츠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코로나19 루머와 ‘팩트의 한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프랑스에서는 유전적, 인종적 특이성으로 인해 동양인들만 코로나19에 감염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어느 언론이나 할 것 없이 팩트 체킹에 나섰다. 이 루머가 진실로 입증될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 사실이 아니라는 저널리즘의 판정을 받았지만, 이 소문이 잦아 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프랑스인들의 그릇된 믿음을 강화한 그 이면엔 유럽인들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당시까지만 해도 전무하다는 통계적 사실로서 ‘팩트’가 존재했다.

기실, 기자들에게 팩트는 신성한 존재다. 진실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팩트는 모든 저널리즘 행위의 출발점이라는 강한 믿음이 100여 년간 언론계를 지배해왔다.

1850년대 와이어 뉴스 서비스의 출현으로 팩트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진 이후 팩트는 비판할 수 없는 저널리즘의 숭고한 성역이 됐다. 하지만 팩트는 그 자체로 진실이 될 수 없다. 진실을 구성하는 작은 퍼즐 조각에 불과하다. 앞선 코로나19 루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적지 않은 허위조작정보의 바탕에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가 존재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팩트의 퍼즐 조각 한두 개만이 들어있다. 허위조작정보의 생산자들은 이 작은 팩트 한두 개에 살을 덧붙이고 포장을 입혀서 거대한 거짓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진실인양 퍼뜨린다. 심지어 그들이 인용하는 팩트들의 다수는 신뢰할 만한 언론사들이 보도한 것들일 때도 많다.

저널리스트들의 믿음을 형성하고 있는 팩트 중심주의는 진실뿐 아니라 거짓을 구성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도 제공한다. 저널리즘 의식이나 취재 역량이 부족한 허위정보 생산자들은 키보드 앞에 앉아 몇 번의 뉴스 검색을 거쳐 허위조작정보를 꾸며낸다. “논란”, “공방”이라는 제목 아래 보도된 팩트들은 거짓임이 분명함에도 발화자 행위의 사실성으로 인해 진실처럼 둔갑한 뒤 허위조작정보의 원료

로 활용된다. 넓게 보면 이는 랄프 폴리치가 1912년에 언급했던 “정직한 부정확성”의 대표적인 사례일지도 모른다.

다시 강조하지만, 팩트 그 자체는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다만 반박, 검증, 계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귀중하게 여긴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되 ‘주의(Ism)’화하면 안 되는 까닭이다.

### 대안을 향하여

워싱턴포스트는 448페이지 분량의 물리 리포트를 보도할 때 팩트만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인용문을 열거하며 복잡한 사안을 단순화하는 데에도 몰두하지 않았다. 팩트를 전체의 퍼즐 속에서 제 위치에 배치하기 위해 내러티브를 바꿔냈다. 그리고 과거 기사, 보고서 등 부가정보를 곳곳에 덧붙이며 하나의 이야기를 재구성했다. 이 자체가 진실이 될 순 없겠지만, 진실에 가까운 무언가로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그들은 아끼지 않았다.

팩트가 진실을 향하도록 하려면 워싱턴포스트의 사례처럼 팩트를 제 위치에 올려놓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넓은 맥락 안에서 팩트가 해석될 때 팩트는 힘을 얻게 된다.

하지만 엉뚱한 곳에 너저분하게 뿌려놓은 팩트는 다른 거짓된 맥락과 결합하면서 거대한 허위정보로 이어지게 된다. 신문이 하나의 팩트에 가치를 더하기 위해 편집의 가치를 입혔던 것처럼, 디지털의 내러티브도 팩트가 진실을 가리킬 수 있도록 ‘구성의 가치’를 덧붙일 필요가 있다.

저명한 저널리즘 학술지 ‘컬럼비아 저널리즘 리뷰’는 2019년 가을호에 ‘팩트를 넘어서’라는 에세이를 게재하면서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다. “우리가 잘못된 정보의 먹구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희망을 가지려면, 우리 모두는 더 넓은 내러티브를 이해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 팩트에만 의존하는 것은 팩트에도 공정하지 않다. 언론인으로서

우리는 스토리가 살아 움직이는 생태계를 고려해야 하고, 팩트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을 인식해야 하고…”라고. 팩트를 둘러싼 거대한 진실의 박스를 알리고 노력할 때에만 팩트는 저널리즘적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일 거다.

이 고된 작업은 트래픽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모든 것을 기사화해야 한다는 인식으로는 구현될 수 없다. 팩트를 맥락의 퍼즐판 위에 올려놓는 작업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가디언과 르몽드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좋은 전범이다. 지난해 가디언은 주간 기사 생산량을 1/3이나 줄이고도 구독자나 방문자 수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프랑스의 르몽드도 기사수를 25%나 줄였지만, 오히려 디지털 구독자는 11%나 늘어났다. 이들은 저널리즘과 비즈니스 양측 면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잡다한 뉴스의 생산을 줄이고 맥락적 기사를 생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러한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었다.

맥락과 결합하지 않은 팩트들, 사실 여부조차 걸려지지 않은 작은 팩트들의 조각들이 트래픽 유발을 위해 과도하게 생산되면서 허위조작정보의 미끼가 되어온 사실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그러한 유형의 기사량을 줄이되, 더 넓은 맥락이 첨부된 가치 있는 저널리즘 생산물에 집중하는 것이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가디언이나 르몽드처럼 수익의 위기 없이 더 많은 독자들을 신뢰의 브랜드 앞에 모이게 하는 묘안일 수 있다.



독일에서 있었던 판결이다.) 한 여성이 어린 시절 몇 년에 걸쳐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를 이후 TV 프로그램에서 말했다. 이에 친부라는 사람은 이 여성을 상대로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는 부작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고등법원은 성폭행은 사실이지만, 친부의 명예가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어 친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해자가 제3자가 아닌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피해자인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순간 결국 가해자인 아버지도 공개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어서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여성은 자기의 이름을 거명하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발언자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여 표현 행위를 할지를 선택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보아 여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괴로운 경험의 개인적 설명은 다른 피해자에게 그의 침묵을 깨라고 고무할 가능성"을 언

급했다. 그러면서 표현 행위자의 권리는 전파의 차원뿐만 아니라, '발언이 끼칠 수 있는 영향의 차원'에서도 향유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익명에 의한 표현 행위는 진정성과 신빙성이 결여되기 십상이므로, 표현 행위자는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자신의 표현 행위가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형태와 정황을 선택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실명의 반대편에 있는 익명 표현은 어떨까. 1950년대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는 전단을 배포하려면 배포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차별 고용을 하는 상점에 대해 보이콧하자는 무기명 전단을 뿌린 사람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일이 생겼다. 이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익명의 전단은 언제나 박해받는 집단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여"했고 이러한 표현은 헌법상 보호 범위 안에 있다는 점에서 위 조례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 실명과 익명의 표현



이후 미국에서는 익명 표현에 대한 판결이 한 번 더 있었는데, 이번에는 익명 표현이 금지되는 범위를 좀 더 제한시킨 주 법률에 대한 것이었다. 오하이오주 법률은 '선거에서 투표권자에 영향을 미치는' 익명 문서의 작성, 배포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민투표 안전에 대한 의견을 담은 무기명 문서가 배포되었고, 해당 배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 역시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주 당국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허위 내용이나 명예훼손성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막기 위해서는 익명 문서를 금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신원의 공개 여부는 집필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다른 문서 내용과 다를 바 없다"고 보면서, 비록 익명 문서의 금지가 허위 언론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조적 이익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금지한 주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여기까지 본다면, 실명과 익명의 선택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의견에 이견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원을 은폐하기 위해 가면을 착용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지아주 법률에 대해서, 주 대법원은 앞의 사례들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sup>2)</sup> 조지아주 대법원은 "우리는 공개적인 위장이 폭력과 협박의 범행을 수행하는 데 특히 효과적인 수단임을 알고 있다. 예로부터 마스크와 후드는 범인의 차림이었다. 그것은 증거를 은폐하고 체포를 방해하며 범인의 내적인 겁의 두려움을 진정시킨다. (...) 이름 없는, 얼굴 없는 모습이 인간의 가슴에 테러를 가하는 것이다."

익명성이 가진 난폭성과 해악성을 주목한 것이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가면 착용과 관련한 당해 규제를 '내용'에 대한 규제라 보지 않고, "내용과는 무관한 내용 중립적인" 규제라고 보았다. "가면금지법이 비언론적 요소의 규제를 위해 제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용이 아니라 절차적이고 행정적인 형식에 대한 규제라면, 금지규정에 대한 심사기준이 완화되어 위헌 가능성도 낮아진다. 법원은 과거 KKK단이 흑인, 유대인, 가톨릭 신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이 만들어졌으며, 테러 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는 중차대한 보호 이익을 가졌다는 점도 부언했다.



작년 홍콩에서 복면금지법이 발표됐었다가 홍콩 고등법원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일이 있었다. 사실 홍콩 복면금지법의 시행 배경에는 민주화 운동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의외로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률은 미국 일부 주,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입법은 안 됐지만, 과거 여러 차례 복면금지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입법에 찬성하지 않는다. 2018년 당시 대한항공 직원들의 가면을 쓴 집회를 보며, 이것은 표현에 관련한 개인의 송고한 권리라고 생각했다.

또한 이런 측면에서 집회참여 시 개인의 신분이나 신원을 드러낼지 여부는 내용 중립적인 규제가 아니고, 내용에 대한 규제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복면 금지라는 규제가 자칫 표현을 희망하는 개인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익명성에 숨은 무책임한 행위를 막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등 다른 형법 규정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포기할 수 없는 공익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오히려 익명성 보장을 통해 소수의 목소리를 보장하는 것이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 아닐까.

1) 이번 글에 소개되는 외국 판례들은 <표현의 자유>(박용상 저, 현암사, 2002년)에서 참고한 것이다. " " 표시는 위 저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문제됐던 법률은 "얼굴의 일부가 숨겨지거나 감춰져 착용자의 신원이 은폐되는 마스크, 두건, 기타 물건을 착용하고 공로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에 그 소유자나 점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고 임한 자는 경죄로 처벌한다"라는 규정이다.

# 좌절과 재기의 갈림길

## 해하가(垓下歌)

해하의 노래

항우(項羽, B.C.232~B.C.202)

力拔山兮氣蓋世, 역발산헤기개세  
힘은 산을 뽑고 기개는 세상을 덮는데,

時不利兮騶不逝. 시불리헤추불서  
때가 이롭지 못하여 오추마도 달리지 않는다.

騶不逝兮可奈何. 추불서헤가내하  
오추마가 달리지 않으니 어찌할 수 있겠는가.

虞兮虞兮奈若何. 우혜우혜내약하  
우미인이여 우미인이여, 그대를 어찌할 것인가.

어린 시절부터 ‘역발산기개세의 항우’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2천여 년 전의 일이고 우리나라도 아닌 중국의 고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마도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언급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시를 제시한 의도는 이 시를 통해 우리 현실의 한 단면을 돌아보고자 함이다.

진(秦)나라의 폭정이 심해지자 진승(陳勝)을 필두로 반란이 시작되었다. 반란군의 판세는 결국 항우와 유방의 두 세력으로 결집되었고, B.C. 206년에 유방이 먼저 진을 무너뜨렸다. 이때부터 천하를 차지하기 위한 건곤일척의 승부가 펼쳐졌는데, 그 마무리가 B.C. 202년 해하의 전투이다.

항우는 전쟁 중에 항상 오추마를 타고 우미인을 데리고 다녔다. 해하의 전투에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궁지에 몰려 패색이 짙어지자 좌절과 포기의 심경을 드러낸 것이 이 <해하가>이다.

항우가 해하에서 퇴각하여 양자강 북안의 오강(烏江)에 이르자, 그곳의 행정 책임자였던 정장(亭長)이 항우에게 충고하였다. “강동이 비록 작으나, 땅이 사방 천리이고 백성이 수십만이니, 또한 왕 노릇을 할 만합니다”라고 하면서, 오직 자신만이 배를 가지고 있어 유방의 군대가 추격할 수 없으니 일단 강동으로 물러나 후일을 기약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항우는 강동의 부형을 볼 면목이 없다고 하면서 그의 충고를 거절하고 최후의 결전을 펼치다가 결국 자결하고 말았다.

이 전투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 많은 후인이 시문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 대략 두 방향이다. 때가 다하였음을 알고 구차하지 않게 대장부다운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주장과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눈을 돌려보면 새로운 길이 있음을 깨우치는 주장이다.

당(唐)나라 후기에 호탕한 풍격의 작품을 많이 남겼던 두목(杜牧,

해하(垓下) :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영벽현(靈璧縣) 동남쪽에 있었던 옛 지명이다.

추(騶) : 항우가 타던 명마인 오추마(烏騶馬)를 말한다.

우(虞) : 항우의 애첩이었던 우미인(虞美人)을 말한다.

약(若) : 2인칭 대명사이다.

803-852)은 <오강정에 쓴다(題烏江亭)>라는 제목의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勝敗兵家事不期

승패는 전쟁에서 결말을 기약할 수 없으니,

包羞忍恥是男兒

부끄러움을 간직한 채 치욕을 참는 것이 남아로다.

江東子弟多才俊

강동의 젊은이들이 준재가 많았으니,

捲土重來未可知

대단한 기세로 다시 돌아올지도 알 수 없었는데.

항우가 자결한 것이 31세이니, 경험이 부족하고 식견이 짧은 나이다. 그가 궁지에 몰린 것은 때가 이롭지 못해서도 아니고 오추마가 달리지 않아서도 아니다.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러나 자신을 반성 하면서 실력을 닦고 세력을 키울 가능성이 충분했다.

두목은 항우가 정장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작은 치욕을 싫어하는 사람은 큰 공을 세울 수 없다고 하였다. 사람이 한 순간의 치욕을 견디지 못해 큰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치욕을 참고 결국 큰일을 이룬 예로 거론되는 일화가 한신(韓信)의 경우이다.

그가 젊었을 때 불량배들의 모욕을 참으면서 바짓가랑이 사이로 기어 나갔다는 부출과하(俛出胯下)의 고사가 그것이다. 결국 한신은 해하에서 항우를 격파한 주역이 되었고, 천하를 차지하려는 야심, 사랑하는 여인, 아끼는 명마를 한 번의 좌절로 모두 팽개친 항우는 대장부와는 거리가 멀게 되었다.

<예기(禮記)> 단궁(檀弓)에는 작은 모욕을 참지 못하고 굶어 죽은 사람을 비평하는 글이 있다.

齊大饑, 黔敖爲食於路, 以待餓者而食之. 有餓者蒙袂輯履, 貿貿然來. 黔敖左奉食, 右執飲曰, 嗟! 來食. 揚其目而視之曰, 予唯不食嗟來之食以至於斯也. 從而謝焉, 終不食而死.

제나라에 심하게 흉년이 들자 검오(黔敖)라는 사람이 길에서 음식을 만들어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어떤 굶주린 사람이 소매로 얼굴을 가린 채 신발을 끌고 비틀거리며 왔다. 검오가 왼손으로 음식을 들고 오른손으로 마실 것을 든 채, “어이! 와서 먹어라”라고 하자 그가 눈을 치켜뜨고 바라보며 말하기를, “나는 ‘어이! 와서 먹어라’라고 하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모욕적인 선심을 거절하여) 이 지경이 되었소.”라고 하였다. 뒤미처 사과하였지만, 끝내 먹지 않고 죽었다.

옛날부터 성현들은 사소한 일에 귀중한 목숨을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새로운 경지를 열어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준 사람들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가까운 주변에서도 수많은 좌절과 수모와 실패를 통하여 성공을 이룬 이들을 만날 수 있다. 역사에 가정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역사 연구자에게 대한 요구일 뿐이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지나간 것에서 교훈을 얻어 현실에 지혜로운 판단을 적용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제대로 된 교훈을 얻으려면 뒤집어볼 줄도 알아야 한다. 가끔은 두목처럼 가정을 통해 역사를 뒤집어볼 것을 제안한다.

## 전나무 숲속에서 들려오는 3월의 법문

강원도 오대산의 명찰 월정사에 가 보셨는지요? 그곳에 이르는 길고 푸르른 전나무 숲길도 걸어보셨는지요? 강원도도, 오대산도, 월정사도, 전나무도, 그리고 그 전나무들이 만들어내는 숲속과 숲길도 거대도시의 일상 속에서 허둥대는 도시인들에게 휴식과 여유, 치유와 회복, 사색과 성찰의 시간을 선사하는 세계입니다.

박호영(1949~ ) 시인은 우리 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이자 문학평론가입니다. 그는 2002년도에 시인으로도 등단하였고 지난해에는 “월정사 전나무 숲을 찾아서” 작품이 수록된 네 번째 시집 <저 너머>를 출간하였습니다. 그런 그는 몇 해 전에 거대 도시인 서울을 떠나 강원도 강릉으로 이주하여 새 단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호영 시인이 사는 강릉에서 월정사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아

직도 추위가 가지지 않은, 이름만의 봄날인 3월에 이 시인은 불현듯 월정사의 전나무 숲이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월정사 전나무 숲을 ‘그대’라고 부르며 ‘그대’가 부르는 ‘소리’에 이끌려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박호영 시인은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전나무 숲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과 눈이 이전보다 밝아지고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은 제멋대로여서 존재의 실상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 다른 사람들이 보았던 것, 어디선가 풍문처럼 들었던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존재의 실상과는 먼 곳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의 참모습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박호영 시인은 이와 같은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월정사 전나무 숲을 정면에서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런 진심에 비친 월정사 전나무 숲은 비바람을 견뎌내느라 ‘거친 피부’를 가진 나무들의 숲이며, 오랜 세월 동안 곳곳함을 잃지 않기 위하여 속내의 아픔조차도 추스르지 못한 ‘고단한 살과 뼈’를 가진 나무들의 숲입니다.

박호영 시인이 월정사 전나무 숲에서 본 것은 그 외형의 싱그러움 안에 감추어진 ‘고행’과도 같은 생명의 여정입니다. 그런 나무들에게 시인은 귀를 기울이며 점점 가까이 다가갑니다. ‘상록침엽교목’이라고 불리는 전나무들, 오대산이라는 강원도의 큰 산에서 살아온 나무들, 특별히

월정사라는 지혜와 자비의 고찰이자 대사원에 몸을 기대고 사는 나무들에서 그는 남다른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박호영 시인은 이와 같은 나무들을 향하여 '그대의 무정설법(無情說法)'을 마주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무정설법이라는 말은 감정과 인지 작용이 있는有情物만이 아니라 산천초목은 말할 것도 없고 만유일체가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불가의 중요한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실로 눈을 뜨고 보면 이 우주 속에서 진리의 드러남을 시현하고 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이 소식을 박호영 시인은 월정사 전나무 숲 앞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3월은 마음의 봄과 신체의 봄이 종종 어긋나는 시기입니다. 마음은 벌써 봄을 품고 있으나 계절은 더디기만 하여 아직도 추위가 우리의 몸속으로 파고드는 시절입니다. 이런 봄날 박호영 시인은 월정사 전나무 숲을 찾아가 사계절 내내 색이 푸르고, 이파리도 예리하고, 키가 아주 큰 교목 앞에서 진담(眞談)이자 법담(法談)을 청취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3월에 무엇을 찾아가 어떤 소리를 들습니까? 시끄럽고 제멋대로이기 쉬운 우리들의 묵고 탁한 마음을 봄 청소하듯 비워보고 천지자연(天地自然)과 두두물물(頭頭物物)이 전하는 '무정설법'을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간의 소리와는 다른 소리가 그곳에서 들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차원으로 깨어나는 기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월정사 전나무 숲을 찾아서

박호영

삼월이 와도 겨울은 끝나지 않았다  
 문득 그대 부르는 소리 들려  
 추위에 한껏 몸을 움츠리고  
 구부정히 그대를 찾아간다  
 그동안 이곳에 와도  
 무심히 지나치기를 몇 번이던가  
 이제야 비바람을 견뎌낸  
 그대의 거친 피부가 보인다  
 오랜 세월 곳곳함을 위해  
 미처 추스르지 못한  
 그대의 살과 뼈도 보인다  
 아직도 봄이 멀었다는 소문 속에서  
 나는 오늘 비로소  
 그대의 무정설법(無情說法)과 마주하고 있다

- <저 너머> (책만드는집, 2019)에서 -

최고의 시간이었고, 최악의 시간이었다.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였고, 불신의 세기였다.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 모든 것이 있었고,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 모두 천국으로 가고 있었고, 우리 모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찰스 디킨스, <두 도시 이야기> 중에서-

아침에 너는 날씨를 살핀다. 최고기온과 최저기온, 풍속과 습도, 통합대기와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와 자외선과 황사와 오존의 농도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시간별 날씨와 주간 날씨와 월간 날씨를 알아본다. 눈과 비의 소식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양으로 내릴지,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해 둔다. 그것으로 너는 너의 하루를 버틴다.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의 인생에 대단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관계에 쫓기며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어쩌다 가끔 즐거운 일도 있었고, 벅찬 감정이 파도처럼 너를 덮칠 때도 있었지만, 그것들은 맹렬한 속도로 너를 지나쳐 갔다.

너의 상자에는 초콜릿보다 돌멩이가 많았다. 너의 카드에는 에이스가 단 한 장도 없었다. 네가 치러야 하는 대가에 비해 보상은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이별의 슬픔은 언제나 만남의 기쁨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그리고 한결같이 느긋하게, 변함없이 끈질기게, 나쁜 일들이 일어났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닥치는 일들이 너를 흔들고 쥐어짜고 깨뜨렸다.

# 버 티 다



2억 년 전, 지구에 기생하고 있던 종 중 95퍼센트가 멸종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사나운지, 얼마나 영리한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대멸종은 95퍼센트의 생명에 한해 공평했다. 나머지 5퍼센트는 운이 좋았다. 살아남은 5퍼센트의 종은 그 후 생물의 전체 유형을 결정했다. 그토록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이 인류의 바탕이고 생존의 규칙이다.

너는 행복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 온 세상이 끝없이 행복을 강요하고 행복을 부르짖고 있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너는 행복하지 않아 우울한 사람과 밥을 먹고, 행복하지 않아 심심한 사람과 술을 마시고, 행복하지 않아 절망한 사람과 여행을 떠났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음은 갈수록 깊어졌다. 너의 화도 갈수록 깊어졌다. 161년 전, 찰스 디킨스가 <두 도시 이야기>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앞에 있었지만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너는 행복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어차피 천국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걷기로 했다.

날씨는 너의 불행을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이자 핑계였다. 지나치게 추운 겨울이나 눈도 내리지 않는 따뜻한 겨울, 반드시 와야 할 봄을 방해하는 꽃샘추위나 너무 갑자기 들이닥치는 봄, 높은 온도와 습도로 숨이 턱턱 막히는 여름이나 갑자기 내리는 여름밤의 소나기, 스산한 가을바람이나 똑똑 떨어지는 낙엽으로 얼룩진 거리에는 불평할 거리가 충

분했다. 통합대기가 '좋은' 날이라도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 있었다. 자외선이 높을 때는 선글라스와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존의 농도가 0.151ppm 이상일 때는 실외 활동과 차량 운행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황사가 밀려올 때는 환기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할 수 있었다. 진눈깨비와 우박과 눈보라는 신선한 자극이었고, 장마와 태풍의 소식은 심장을 뛰게 해주었다.

매일 아침, 너는 하루 몫의 불행을 선별하여 저장하고, 마음 놓고 불행할 준비를 마친 다음 세상으로 나간다. 앞으로 닥칠 불행들, 이룰테면 줄어들기만 하는 은행의 잔고가 가져다줄 생활고, 시간 내에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 비롯될 곤란한 상황, 피치 못할 이별로 이어질 뼈격거리는 관계, 그리고 멀리 혹은 가까이 있는, 결국 너에게도 이를 죽음 같은 결정적인 불행들은, 사소하게 불행한 지금의 너로부터 한 걸음 물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힘겨운 날이 있다. 무척 드물지만, 완벽하고 완전한 날씨가 찾아오는 날이다. 그런 날에 너는 무겁고 깊은 불행에 빠진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것쯤은 참을 수 있다. 그리운 것은 연인의 다정한 손길이다. 네가 일찍이 외면했던, 찰나의 기쁨과 한순간의 벽참이다. 너는 열 개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잔뜩 힘을 주고, 절벽 끝에 매달린 사람처럼, 그 하루를 버틴다. 내일이면 다시 날씨가 안 좋아질 거라고, 그리하여 불행의 이유를 넉넉히 품게 되리라고 믿으며.





Sorry We Missed You

## 우리가 공유해야 할 부끄러움 ‘미안해요, 리키’

‘리키 터너’(크리스 히친)는 건설 현장에서 안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다. 기반 공사, 배수 공사, 굴착, 콘크리트 치기는 물론이고 바닥 작업, 판석 깔기, 심지어 무덤 파기까지 그는 늘 성실하게 일해왔으며 평판도 좋다. 그러나 짜증나는 상사와 게으른 동료에 신물이 난 리키는 혼자 하는 일을 택한다. 리키가 택배 회사 간부와 면접을 보는 영화의 첫 장면은 켄 로치 감독의 전작인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의 첫 장면과 유사하게 연출되었다. 암전된 화면에 노년의 ‘다니엘’(데이브 존스)이 질병 수당을 받기 위해 공무원과 나누는 대화만 들리는 그 장면은 사무적인 질의응답 과정과 다니엘의 답답한 심경에 이입하게 만든다. ‘미안해요, 리키’에서는 처음에 리키와 면접관의 목소리만 들려줌으로써 리키가 이제껏 먹고 살기 위해 해왔던 노동의 종류와 함께 이 일을 왜, 얼마나 원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리키가 선택한 택배 기사 일은 일반 직장과는 사뭇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는 개인사업자 가맹 주로서, ‘고용’되는 게 아니라 회사에 ‘합류’한다. 관리자는 출근 카드도 목표 실적도 없고, 알아서 일만 하면 되

기 때문에 리키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말한다.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러한 구조에는 짙은 그림자가 깔려 있다.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택배 기사들은 사고나 임금에 대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리키는 자기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기쁨에 그에 따르는 위험 부담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일 14시간씩

주 6일을 일해야 하는 노동의 강도와 '정확 배송'을 위한 시간 싸움은 리키를 점차 지치게 만든다. 제멋대로인 수신인들과 교통 체증, 주차 문제 등도 리키에게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다.

한국어 제목에는 리키의 이름만 들어가 있지만, 리키의 아내인 '애비'(데비 허니우드)의 직업도 노동자의 권익과는 거리가 멀다. 애비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집에 찾아가 음식을 먹여주고 돌봐주는 간병인이다.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험한 일임에도 기본적으로 환자들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는 애비는 이 직업에 애착을 갖고 있다. 그러나 노동 환경은 밑바닥 수준이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는 애비는 초과 수당 없이 건당 돈을 받고, 교통비도 자비로 해결해야 하는 '제로 아워 계약(zero-hour contract)' 노동자다. '제로 아워'란 최저 근무 시간이 0시간이라는 의미로,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에만 나와 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계약 하에 있는 노동자는 저임금인 데다 언제 일이 있을지 모르므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꼭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관계된 일이므로 환자들에게 일이 생기면 애비는 시도 때도 없이 달려 나간다. 직업 자체에 윤리적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거기에 리키가 뺨을 사기 위해 애비의 차를 팔자 일은 몇 배로 고달파진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시간에 맞춰 다음 집에 도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쏟아지는 환자들의 불평과 피로함 속에서 애비도 탈진 상태가 되어 간다.

리키와 애비는 밤낮없이 일하면서도 돈을 모을 수 없을뿐더러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마음도 편치 않다. 여기에 일 때문에

방치된 아이들은 터너 부부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큰 아들인 '세브'(리스 스톤)는 학교를 빠지고 남의 벽에 그래피티를 하러 다니기 일쑤고, 너무 일찍 철이 들어 버린 막내 딸 '리사'(케이티 프록터)는 가족들의 눈치를 본다. 리키가 택배 일을 하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어지자 아내와 아이들과의 거리도 멀어져 간다. 자본이 행복을 결정하게 된 사회에서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은 어쩌면 동화 속이나 존재하는지 모른다. 한창 젊은 부부와 자녀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미안해요, 리키'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보다 더 어둡다. 성실하게 일해도 한 가정이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은 안쓰럽고 안타깝다. 그러나 그것은 외면해서는 안 될 동시대의 고통이자 진실이다. 애비 부부가 직업으로 인해 마주하는 여러 문제와 갈등은 영국 사회의 큰 병폐인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것이 남의 나라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 한국에서도 여러 기사와 책에서, 곧 닥칠 '호출 노동자'의 삶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영화의 원제는 'Sorry, We Missed You'다. 이는 수취인이 부재중일 때 택배 기사가 남기는 메모인데, 한국 제목에는 노동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리키에 대한 미안함을 담았다. 동시대 청년들에게 불행의 씨앗만 남겨둔다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것이다. '미안해요, 리키'에 담긴 부끄러움은 더 널리 공유되어야 한다.



# 위원 동정

## 중재위원 사퇴

법원 인사로 인해 중재위원직을 사퇴한 중재위원은 아래와 같다.

중재부	성명	재임 중 소속 직위	사퇴 일자
서울제2중재부	이우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20. 2. 23.
서울제3중재부	이동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제4중재부	박병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제5중재부	김형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제7중재부	황기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제8중재부	박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중재부	염원섭	대전지법 부장판사	
강원중재부	김현미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전북중재부	구창모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경남중재부	황영수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충북중재부	지영난*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2020. 2. 12.

\*겸임 해임(대전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겸임)

## 심미선 위원·정연우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제12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심미선 위원(서울제3중재부,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과 정연우 위원(충북중재부,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은 2월 11일 제12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 불만 및 청원 사항에 관해 심의하며, 임기는 1년이다.

## 장윤미 위원, MBN 제1회 <공익 변호사상> 수상

장윤미 위원(서울제6중재부, 법무법인 원앤원 변호사)은 1월 30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MBN 제1회 <공익 변호사상> 시상식에서 정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공익 변호사상>은 인권 향상과 사회 정의 실현, 약자 보호 등 공익적 가치에 기여한 변호사에게 수여되며, 올해 첫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 조정현 위원, '경남도의회 법률고문' 위촉

조정현 위원(경남중재부, 법무법인 창해 대표변호사)은 2월 10일 경남도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다. 법률 고문은 의회 관련 법령 사항 해석 등 소송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며, 임기는 2년이다.

##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언론중재 '9'와 언론중재위원회

여러분은 어떤 숫자를 좋아하세요?

흔히 떠올리는 숫자 '9'의 의미는 완성, 성취 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끝수가 '9'인 날은 '손(損) 없는 날'이라고 해서 혼례, 개업, 이사 등 새 출발을 위한吉日이 되기도 하는데요.

2010년대의 끝수인 2019년, 위원회가 접수 처리한 조정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 2019년 조정신청 처리결과

(2019.1.1. ~ 2019.12.31.)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3,544	1,129	121	100 (6)	734 (26)	279	65	932	184	69.2
%	31.9	3.4	2.8	20.7	7.9	1.8	26.3	5.2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된 건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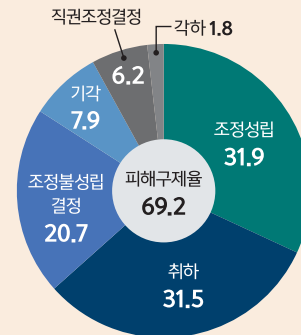
※ 피해구제율 =  $\frac{\{\text{조정성립} + \text{직권조정결정(동의)} + \text{취하(구제)} + \text{그 외 피해구제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 - (\text{기각} + \text{각하})\}}$

위원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3,544건의 조정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른 사건이 1,129건 (31.9%)으로 가장 많았고, 취하 1,116건(31.5%), 조정불성립결정 734건(20.7%), 기각 279건(7.9%), 직권조정결정 221건(6.2%), 각하 65건 (1.8%) 등의 순이었습니다.

3건 중 1건이 취하됐을 정도로 취하사건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취하사건의 상당수(1,116건 중 932건)가 조정심리 전후에 당사자 간 별도 합의를 통해 보도문이 게재되거나 기사의 열람·검색이 차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9년도 조정신청 처리결과



위원회는 2020년 3월 31일 창립 39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원회는 올해에도 꾸준하지만 새로운 '완성'을 향해 한 걸음씩 뚝뚝뚝 걸어갈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더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주시길 거죠?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1호 논문 공모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1호에 수록할 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 공모 분야

- 기획논문  
- 주제: 데이터 시대, 저널리즘 그리고 인격권 (기획논문 제안서 제출 필요)
- 연구논문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전반(언론법제 관련 판례 평석 포함)

## 응모 자격

-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 관련 분야의 전문가자격증 소지자 및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등

## 제출 마감

- 기획논문  
- 제안서 제출마감: 2020년 3월 6일(금) 24:00까지  
- 기획논문 제출마감: 2020년 5월 13일(수) 24:00까지 (제안서 채택자에 한함)
- 연구논문 제출 마감: 2020년 5월 13일(수) 24:00까지

## 논문 접수

- 이메일 접수(journal@pac.or.kr)

-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하시거나 연구팀(02-397-3042)으로 문의바랍니다.
-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이며, 올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